

울산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127422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43,650,000원을 지급하고,
다. 2024. 8. 29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6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

판사이동욱

별지